

#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심사보고서

1996. 7. 1.  
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6월 12일 이천시장
- 나. 회부일자 : 1996년 6월 14일
- 다. 상정일자 : 제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1차(96.6.22), 제2차(96.6.24) 산업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박문식)

### 가. 제안이유

- 지역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주민등록을 근거로하여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산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게 됨. 또한 피보험자 관리는 물론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내 지역 의료보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천시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지원사항 : 읍,면,동사무소내 지소설치 시설지원 및 지방세 과세자료 제공(안 제2조)
- 운영규정 제정등 :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칙 제정(안 제3조)
- 공부열람 : 읍,면,동사무소내 지역의료보험지소 근무자의 공부열람 편의제공(안 제4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태신)

- 지역의료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88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주민등록을 근거로하여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산정을 위하여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고, 또한 피보험자 관리는 물론 관할 행정구역 읍,면,동사무소내 지역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이천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2조(지원사항) 제1항 제3호 "의료보험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상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로 특된것은
-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지역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신고)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항과 같이 지

역조합의 관할지역에서 퇴거한 때에는 전입한 지역에서의 지역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로써 상실신고를 같음하고 있고,

- 주민등록법 제14조(거주지의 이동) 제2항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제14조의 2(타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병역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인감증명법, 생활보호법, 의료보험법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3(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계서류의 이송등)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재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송할 때에는 거주지를 이동하는 병역의무자, 향토예비군, 보훈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지역의료보험대상자 및 장애인의 관계서류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송부건을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같이 제반 규정상 전입신고서 반으로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여 주민이 주소에 정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되어 정부 민원행정 절차간소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일부수정의결 (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수정조례안 첨부

##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율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

이천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율위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이하생략)

## 수정안 대비표

현행	수정안
<p>제2조(지원사항) ① (생략)</p> <p>② <u>풍·리·반장은 보험료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등을 적극 지원한다.</u></p> <p>③ (생략)</p> <p>④ (생략)</p>	<p>제2조(지원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② (현행의 제3항과 같음)</p> <p>③ (현행의 제4항과 같음)</p>